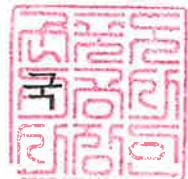


군포도시공사 제6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
받은 「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」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
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배재



2025년 11월 21일

군포도시공사 규정 제 156 호

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

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9조 제2항의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9조(징계의 종류와 효력)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해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자는 공사직원의 신분을 해제한다.
2. 감봉 및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며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출근하거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| 소 관 부 서 | | 경 영 기 획 실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입 안 자 | 직 위 성 명 | 경 영 기 획 실 장 곽 성 우 |
| | 직 위 성 명 | 인 사 총 무 팀 장 신 재 두 |
| | 담당자 성명 (전 화) | 현 진 환 (3 9 0 - 7 6 4 1) |

신·구 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|
| <p>제49조(징계의 종류와 효력)</p> <p>① ~ ② (생 략)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감봉 및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며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직원의 신분은 <u>보유하나</u> <u>직무에는</u> 종사하지 못한다.</p> | <p>제49조(징계의 종류와 효력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----- --<u>보유하나</u> <u>출근하거나</u> <u>직무에</u> <u>는</u> -----.</p> |

[참고사항]

□ 국민권익위원회 ‘공직유관단체 징계처분의 실효성 강화’ (2022.05.30.)

지방공기업 인사조직운영기준 또는 지방출자·출연기관 인사·조직지침(예시)

- 지방공사·공단(출자·출연기관)의 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참고하여 자체 인사규정 등으로 정하되, 정직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하여야 함

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(예시)

제00조(정직의 효력)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정직 기간 중에 출근하거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